

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추진단 운영규정

제정 2019.03.11.

개정 2019.12.16.

개정 2022.04.25.

개정 2023.07.03.

개정 2024.05.20.

개정 2025.06.23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 「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운영」에 따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(이하 “본교”)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추진단(이하 “사업단”)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규정은 “사업 추진단 운영규정(이하 “운영규정”)이라 한다.

제3조(세부업무) 사업단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총괄 업무
2.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업무
3.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 관리 업무
4.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추진 사항 및 사업비 관리 업무
5.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 관리 업무
6.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 성과 홍보 및 확산 업무
7.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및 프로그램 등 운영 및 지원 등

제2장 조직 및 구성

제4조(조직 및 구성)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단은 총장 직속 기구로 설치한다.

제5조(사업단장) 사업단장은 교무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사업단장은 제3조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3장 위원회

제6조(대학혁신운영위원회) ①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

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업 총괄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
2. 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도출
3. 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 관리

③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회의 위원은 내부 사업추진과 관련된 교무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, 외부 전문가와 재학생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2. 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
3.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4.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과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.
-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⑥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⑦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⑧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7조(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위원회) ① 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자체평가 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업 성과지표와 추진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
2. 성과 분석 및 평가 기반 개선(안)과 환류사항 마련

③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혁신사업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추진단 및 대학혁신 운영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교직원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8명 내외로 구성한다.
2.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,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
3.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4.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비관리위원회) ①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계획 등 사업비 관리 역할을 위하여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사업비관리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업비 집행과 관리에 대한 적절성 검토 및 논의
2. 사업 실행 예산과 집행 기준에 대한 검토 및 논의

3. 사업 간 사업비 중복에 대한 검토 및 논의

③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포함 총 6인 내외로 구성한다.
 2. 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
 3. 위원은 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 4.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9조(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실무위원회) ① 사업 전반에 대한 실무적 영역을 검토 및 개선을 위하여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업 세부 추진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
2. 사업비 집행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
3. 사업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

③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회 위원은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, 각 부서/스쿨별 팀장/행정실장 1인과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1인을 기준으로 총 30명 내외로 구성한다. 단, 각 부서/스쿨별 팀장/행정실장 1인은 필수 참여하며,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1인은 각 부서/스쿨의 상황에 따라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
 2. 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필요시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
 3. 위원은 사업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.
 4.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4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

제10조(사업비) 사업단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로 운영한다.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기준에 따른다.

제5장 기타

제11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부칙

- ① 이 규정은 2019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선정 후 바로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6일자로 시행한다.
- ③ 이 규정은 2022년 4월 25일자로 시행한다.
- ④ 이 규정은 2023년 7월 3일자로 시행한다.
- ⑤ 이 규정은 2024년 5월 22일자로 시행한다.
- ⑥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자로 시행한다.